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P
----------	-----

제출년월일 : 1993.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부 및 사용허가를 유상인 경우는 제외시키고 무상인 경우만 포함하도록 하며 중복된 문구 삭제 및 지방의회의 보고기일 연장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주요골자

- 대부료의 납기를 각호에 납기일을 명시한 것을 단서에도 중복 명시하여 단서를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부 및 사용허가중 유상대부 또는 유상 사용허가 제외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와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의 지방의회보고 기일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변경
- 관사의 구분중 3급관사에 기획관리실장등 직위를 명시한 것을 3급이상 공무원으로 변경

□ 근거법령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

□ 칙 부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단서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와 "를 삽입하고 동조 제3항중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를 익년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9조중 "교환등을 "을 "교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로 한다.

제51조 제3호중 "기획관리실장, 농촌진흥원장 및 경영개발사업단장의 관사 "를 "3급이상 공무원관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